

## **[추경] 2026년도 일반 물류바우처(1차)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**

최근 글로벌 물류비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운송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,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「2026년도 일반 물류 바우처 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15일  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### 1. 사업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- 글로벌 물류비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국제운송 비용을 완화하고,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지원

#### □ 모집규모 : 약 000 개사 내외

#### □ 사용기간 : '26. 2. 1 ~ 12. 31 (11개월)

#### □ 신청기간 : '26. 4. 17(금) ~ '26. 5. 6(수) 17시까지

#### □ 주무부처 / 운영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 /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#### □ 신청방법 : 수출바우처 누리집(www.exportvoucher.com) 상시 신청

- 신청 진행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 활용 필요

#### **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**

- \*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(수출바우처 시스템용)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,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,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
- \*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,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

□ 사업내용

- (지원내용) 물류바우처를 활용,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“국제운송”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 이용 가능

**【 주요 물류서비스 지원 내용 】**

구 분	세부 내용	비고
국제운송료 및 보험료	해상·항공 등으로 이동하는 운임 및 보험료	인코텀즈 C, D조건에 한하여 지원
샘플 운송료	실제 수출을 위한 상품 샘플이 운송되는 경우	
해외 내륙 운송료	컨테이너 트럭 운송 → 1차 도착지에서 목적지 이동	
국제특송	우체국 및 국제특송 (FEDEX, DHL, UPS 등) 이용 비용	
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	온라인 플랫폼 등이 직접 제공하는 국내외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	
선적 전 검사료	수출품 선적 전에 공인 검사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품질 인증 비용	
국제운송 부대비용	물류 반송 비용, 전쟁위험 할증료, 지체료,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	

\* 상기 주요 물류 서비스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, 세부 지원항목 및 정산 기준은 별도 공지된 정산가이드를 참고

- (지원방식) ①, ② 중 선택 가능

- ① (지정수행기관 이용) 수출바우처 시스템 내 국제운송 메뉴판에서 지정된 수행기관과 계약 후, 서비스 이용(대금은 수행기관에 지급)
- ② (사후정산 방식) 참여기업이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고, 비용을 선 집행한 후 증빙서류 제출 시 대금을 참여기업에게 지급

-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
- 정부지원금 70%, 기업 자부담금 30% 적용
- \* 수출액 및 매출액 기준 미적용
- 참여기업은 선정 후 자부담금을 납부하면, 이에 상응하는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총 바우처 금액을 사전 발급
- 발급된 바우처는 사용기간 내 수출바우처 시스템에서 자유롭게 물류 서비스 이용

## 2. 지원요건 및 내용

- 지원대상 :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 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
### 신청 제외 대상

- ◆ 휴·폐업했거나 국세·지방세 체납중인 경우
- ◆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 - \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
- ◆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
- ◆ 산업부 수출바우처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는 기업 ('26.2.1일 기준)

\* 예시 : 산업부(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), 지방정부(KOTRA 지역본부 연계 진행형 사업) 등

- 단,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(지사화사업, OK FTA, 인증취득, 박람회 등)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

- ◆ 최근 2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

구분	바우처 사용률	제재사항
'24.2.1일 이후 수출바우처사업 선정기업	70%미만	■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
	70%이상 ~ 85%미만	■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
	85%이상	■ 제재 없음

- ◆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
- ◆ '26년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

#### [ 특수관계기업의 정의 ]

-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(정의) 제22호, 제23호에 따름

[예]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, A기업 대표자의 가족 등이 운영하는 B기업 등 (자세한 사항은 관리지침을 참고 요망)

※ 동일사업장 등 사실상 동일기업으로 의심되는 경우, 실질적인 경영의 독립성 (주주현황, 임차관계, 인력현황 등)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

- ◆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협약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
- ◆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◆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
업종 분류	품목코드	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
제조업	33402 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中	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 中	담배 중개업
	46~47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, 사행성,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, 주류, 담배 소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정보통신업	58 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임대업	76390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2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
\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

## □ (필수) 신청서류

### ※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

연번	서식명	내용
①	사업신청서	홈페이지에서 작성
②	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	홈페이지에서 작성
③	사업자등록증명원	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
④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*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	*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 첨부
⑤	중소기업확인서 *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sminfo.mss.go.kr) 발급

□ 신청 접수 및 서류제출 안내 ※반드시 숙지 후 제출

- (①~②) 사업신청서, 신용조회·정보제공 동의서 :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 활용(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)
- (③~④) 민원증명 서류 : 「중소기업지원플랫폼」을 통해 간편 제출
  - \* 중소기업지원플랫폼([https://m.one-click.co.kr/#/kosmes\\_export](https://m.one-click.co.kr/#/kosmes_export)) :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
  - \*\*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,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
- (⑤) 중소기업확인서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[sminfo.mss.go.kr](http://sminfo.mss.go.kr))에서 발급

### 3. 세부 지원내용

□ 지원 항목

-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
  - 인코텀즈 E조건(EXW) 및 F조건(FCA, FAS, FOB)은 수출자가 국제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, 지원 불가

[ 정산 가능/불가 항목 ]

구분	세부내용
필수 충족요건	- 운송 물품이 수출품 또는 샘플(유,무상) 운송인 경우 지원가능 -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(CFR-CIF-CPT-CIP), D조건(DAP-DPU-DDP)에 한해 지원
정산 가능항목	① 항공 · 해상운송료 ② 보험료 ③ 국제복합운송료(기항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국제운송) ④ 현지 내륙운송료(현지 내륙운송료는 인코텀즈 D조건에 한하여 지원) ⑤ 추가할증료 : 유류할증료, 저유항할증료, 보안할증료, 성수기할증료 ⑥ 물류서비스 : 종합물류대행서비스(풀필먼트), 선적전검사, 창고임대료 ⑦ 정산검수 신청가능 물류비 = ①+②+③+④+⑤+⑥ * 우체국 특송 서비스(EMS, K-packet, 기업화물 서비스 등)도 정산 가능

구분	세부내용
<b>정산 불가항목 예시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 및 F조건 수출거래</li> <li>- 현지 통관료 : 화물의 관할 세관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</li> <li>-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(위험물 취급수수료 등)</li> <li>-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</li> <li>- 관세,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</li> <li>- 각종 문서 송달비용</li> <li>-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(해외→해외) 운송료</li> <li>-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</li> <li>-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</li> </ul>

- 상기 정산 불가 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**정산 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정산 불가함**
- 세부 정산 기준 및 관련 서류는 **공지된 정산가이드 참고**

□ **지원 한도**

- 참여기업별 발생한 물류비 최대 15백만원 지원 (보조금 10.5백만원, 자부담 4.5백만원)
-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 70%, 기업자부담금 30% 적용
- 정산 가능 물류비 항목은 합산하여 신청 가능하나, 총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

**4. 참여기업 신청 및 절차**

\* 하기 내용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□ **신청 및 지원 절차**

- ① 사업신청 → ② 요건 검토 및 선정 통보 → ③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(자부담금 입금) → ④ 정산신청 → ⑤ 정산금 지급 순
- 이 후, 기업이 정해진 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정산 신청 가능

① **사업 신청 (참여기업)**

- 수출바우처 누리집\*을 통해 **온라인 신청**(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)

\* 신청 페이지 : 수출바우처 누리집([www.exportvoucher.com](http://www.exportvoucher.com))

② 지원대상 확인 및 선정 통보 (운영기관)

- 신청 제외 대상 여부 및 제출 서류 구비 여부 등 요건을 확인하여,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

③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(참여기업, 운영기관)

- (협약 체결)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이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전자협약체결
- (바우처 발급) 참여기업이 자부담금을 납부하면, 납부금액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을 매칭, 바우처 발급

④ 정산 신청 및 대금지급 (수행기관, 참여기업)

- (지정수행기관 이용)

- ① 수출바우처 시스템 내 국제운송 메뉴판에서 지정 수행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
- ②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에서 비용이 차감되며, 수행기관이 서비스 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
- ③ 운영기관이 제출한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수행기관에게 정산금 지급

- (사후정산)

- ① 참여기업이 물류서비스를 직접 계약 및 이용 후 비용을 선 집행
- ② 이 후,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 신청 진행
- ③ 운영기관이 제출한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참여기업에게 정산금 지급

## 5. 참여 유의사항

- ◆ 정부보조금 지급은 '수출바우처'와 같이 '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' 및 '정산 신청'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.
- ◆ 신청하는 물류비 건에 대해 타 중앙정부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건은 정산 신청 불가하며, 향후 중복수급 적발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,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예정입니다.
- ◆ 본 사업의 바우처 사용률이 85%미만일 경우, 관리지침에 의거, 2년간 사업의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- ◆ 본 사업은 사후정산 방식과 수행기관 이용 방식으로 운영되며, 참여기업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. 다만, 동일 물류 건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.
- ◆ 정산 신청시, 사업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,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합니다.
- ◆ 사업 신청시 필수서류 미제출, 지원 결격 요건 사항,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된 경우 등이 있을 경우 별도 보완 요청없이 자동탈락 처리 됩니다.
- ◆ 물류비는 반드시 사용기간 내 발생 및 집행된 건에 한해 인정되며, 정산 기준 및 인정항목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원

## 6. 문의처

세부사업		담당기관 / 부서	전화번호
사업	온라인 문의	홈페이지 내 '온라인 문의' 이용 * 커뮤니티>문의하기>문의유형 : "물류 바우처" 선택 후 작성	
	전화 문의	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	055-752-8580
시스템	시스템 이용관련	홈페이지 내 '온라인 문의' 이용 * 커뮤니티>문의하기>문의유형: "시스템" 선택 후 작성	
	중소기업지원 플랫폼	<a href="https://m.one-click.co.kr/#/kosmes_export">https://m.one-click.co.kr/#/kosmes_export</a> 02-3771-1050	